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2. 14(목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 에너지자원정책과 FTA서비스투자과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덤핑조사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 박재영 과장(044-203-4360) 권혜진 과장(044-203-5810) 김영만 과장(02-734-1864) 김종주 과장(044-203-4240) 고재강 과장(044-203-5870)	담 당 자	박근형 사무관(044-203-5692) 정성훈 사무관(044-203-5122) 정성화 사무관(044-203-5811) 조민지 사무관(02-734-1866) 정 석 사무관(044-203-4243) 권순심 사무관(044-203-5872)

산업부,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계기 한·중 산업·에너지·통상 분야 협력 강화 기반 마련

-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MOU 5건(정상임석하 3건, 면담계기 2건) 체결 -
- 에너지, 신에너지차, 로봇, 바이오 등 민간 MOU 19건 체결 -
- 산업부 장관, 중국 공업신식화부장·국가에너지국장·상무부장과 면담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백운규)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기 **12.14.(목)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각각 산업·에너지·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공업신식화부·국가에너지국·상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**했다.

○ 또한,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.14(목) 먀오웨이(苗圩, Miao Wei) 中 공업신식화부장(장관), 누얼 바이커리(怒尔 白克力, Nuer Baikeli) 中 국가에너지장(장관)과 면담을 가졌으며, 12.15(금) 중산(钟山, Zhong Shan) 中 상무부장(장관)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.

※ 中 상무부장 면담 결과는 12.15.(금)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1. 韓산업부-中공업신식화부 간 친환경-생태산업개발 및 신산업 협력 확대

< 친환경-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 >

□ 산업부는 중국의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**공업신식화부**와 **'친환경-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하여, 양국 생태산업단지 개발, 자원·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**중국**은 아름다운 중국(美麗中國)을 기치로 **오염 저감 등 '생태 문명 건설'에 큰 관심**을 갖고 있으며,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**'생태산업단지 개발'**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바, 동 분야에서 **양국간 친환경 산업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**해 나가기로 했다..

- 이를 위해 **한중간 정부와 관계 기관, 기업 등이 참여하는 '민관 교류 협의체'를 신설**하고 구체적인 협력 이행안(로드맵)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양해각서(MOU) 체결을 계기로 청정 생산,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등 관련 우수 기술을 갖춘 **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진출 기회**가 확대되고, 한중간 **생태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**하면서 **상호 정책을 보다 발전**시켜 제3국 등에 기술(노하우)를 전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중국 공업신식화부장 면담 >

□ 한편, **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.14(목, 14:00~15:20) 공업신식화부 먀오웨이(苗圩, Miao Wei) 부장(장관)과 면담**을 갖고,

○ 한국의 '혁신성장'과 중국의 '창신형 국가' 전략간 연계를 통해, 혁신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**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**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백 장관은 **산업 협력이 양국 협력의 기초**이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기존의 **'제조 협력(make with)'**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25년을 만들어 가는 **'창조 협력(create with)'**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.

○ 또한, **신에너지차, 배터리**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, 특히 **중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**하면서, 동 문제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○ 먀오 부장은 양국간 **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**에 적극 공감하고, 양국 **제조업의 디지털화, 네트워크화, 스마트화**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**제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**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.

○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"제3차 산업장관회의"를 개최하기로 했다.

2. 한국 산업부- 중국 국가에너지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

< 에너지분야 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 >

□ 산업부는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**국가에너지국**과 **'에너지분야 협력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해, **전력망 연결, 천연가스 교역, 에너지 신산업 및 재생에너지, 에너지 신기술**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동 양해각서로 **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**했으며,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.

<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면담 >

□ 한편, **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.14(목, 08:00~08:30) 국가에너지국 누얼 바이커리(怒爾 白克力, Nuer Baikeli) 국장(장관)과 면담**을 갖고, 한·중 에너지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양 장관은 전력망 연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**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**하고, **이번 양해각서(MOU)가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**하는 **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**으로 평가했다.

○ 특히, 이번 방중계기 체결된 한국전력- 중국국가전망(SGCC)·글로벌 에너지 연계 개발협력기구(GEIDCO)* 3자 간 **'한중 전력망 연계 거래조건협정서(MOA)**'**, 에너지경제연구원-중국 에너지연구소간 **'에너지 현안 공동연구 수행 양해각서(MOU)'**를 토대로 한-중 계통 연계의 청사진을 도출하기로 했다.

* **GEIDCO** : 글로벌 에너지 연계를 통한 청정에너지원 개발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국가전망 주도로 설립('15.9월)된 비정부·비영리 단체

** **한중 전력망 연계 거래조건협정서(MOA)** :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한중간 기술적 타당성, 수익, 비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채널 구성·운영

- 또한, **대표적인 액화천연가스(LNG) 소비국**으로써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15일 **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(CNPC)**와 **'가스분야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하기로 했다.

*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(CNPC):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

- 이와 함께 양 장관은 **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제3국 공동 진출**을 위해 **긴밀히 협력**하기로 하고, 앞으로 신재생·신산업 분야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
3. 한국 산업부- 중국 상무부 간 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

<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(MOU) 체결 >

※ 상세내용 <참고3~7> 참조

□ 산업부는 중국의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상무부와 **'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해, **높은 수준의 서비스·투자 자유화를 목표**로 자유무역협정 **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**하기로 하고 **내년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함.**

○ '15. 12월 발효한 **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규정**하고 있으며,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대해 확인했다.

○ 이를 통해, 급속도로 성장하는 **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**하고, **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**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* 中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(%): ('13)46.7→ ('14)47.8 → ('15)50.2 → ('16)51.6
* 중국은 내수.소비 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'13.5 규획('16~20년)에서 혁신.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적극 추진중

- 아울러, **그간 제조업과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교역**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**서비스 교역으로까지 확대**되어 **양국 경제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**를 마련했다.

○ 정부는 1차 협상 전 **공청회,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진행**하고, 업계·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**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, 반영**하기로 했다.

< 중국 상무부장 면담 >

□ 한편, **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국 상무부 중산(钟山, Zhong Shan) 부장(장관)과 내일(12.15(금)) 별도로 양자면담**을 가지고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을 포함한 **양국의 통상현안을 논의하**고, 무역구제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(MOU) 2건*도 체결하기로 했다.

* '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', '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MOU'

※ 중국 상무부장 면담 결과는 12.15(금)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4. 민간 양해각서(MOU) 체결

□ 아울러,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**무역,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해각서(MOU) 19건을 체결했다.**

○ 양국 기업·기관은 전자상거래(1건), 에너지(3건), 금융(2건), 바이오(3건), 신에너지자동차(2건), 로봇(2건), 산업기술(2건) 등 **다양한 신산업 분야**와 섬유·의류(1건), 가전·기계(2건) 등 **전통적 협력 분야** 및 **민간 대화 채널 신설**을 위한 양해각서(MOU)(1건)를 체결하여 **경제협력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.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**대통령 방중 계기 체결 산업부 소관 MOU 체결 현황**

MOU 명칭 (체결기관)	주요 내용 및 의의
① **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 (★)** (산업부-中 상무부)	**(내용)** 한중 FTA 부속서 22-A 규정에 따라 한중 양국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**(의의)** 한중 FTA의 실효성 및 완결성 제고, 유통·금융 등 서비스 분야 한중 교역·협력 확대 계기 마련
② **에너지협력 MOU (★)** (산업부-中 국가에너지국)	**(내용)** 전력망 연계, 신재생에너지, 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, 한중 에너지 협력 협의체 신설 등 **(의의)** 한중 경제협력 분야를 에너지까지 확대(기존에는 한중 에너지협력 채널 부재)·다각화 추진
③ **친환경 생태산업개발 MOU (★)** (산업부-中 공신부)	**(내용)** 양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협력, 청정생산·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 등 협력강화 **(의의)** 한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우리기업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 창출,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 강화
④ **경제무역관계 발전강화를 위한 협력제고 MOU** (산업부-中 상무부)	**(내용)**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, 양국간 서비스교역 발전, 기존협력사업(△제3국공동진출, △투자협력기금, △산업협력단지 등)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경제무역관계의 질적 업그레이드 및 다각화 추진 **(의의)** 사드 등으로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모멘텀 조성,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역·협력 다각화 촉진
⑤ **무역구제 협력 확대 MOU** (산업부-中 상무부)	**(내용)** 수입규제 등 관련 정책교류, 국제규범 준수, '민관전문가 협의회' 등 수입규제 문제의 우호적 해소를 위한 협의채널 구성 **(의의)** 반덤핑 조치 등에 따른 통상마찰 완화 및 대중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,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

※ ★ : 정상임석하 체결 MOU

참고2 방중 계기 민간 MOU

MOU 명칭 (체결기관)	주요 내용 및 의의
① 한중 전력망 연계 MOA (한전-中 국가전망-中 GEIDCO)	**(내용)**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한중간 기술적 타당성, 수익·비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채널 구성·운영 **(의의)** 한중일 동북아슈퍼그리드 촉진을 위한 모멘텀 조성
② 한중 가스분야 협력 MOU (가스공사-中 CNPC)	**(내용)** LNG도입조건 유연성 증대 및 시장 정보 교환, 양사간 및 제3국에서의 LNG트레이닝 등 가스분야 협력 강화 **(의의)** LNG 도입조건 개선 등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
③ 한중 에너지현안 공동연구 협력 MOU (에경연-中 에너지연구원)	**(내용)**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효율, 전력망 연계 등 한중 상호 관심 분야 에너지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**(의의)** 한중간 에너지 이슈 공동대응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
④ 수소차 확산 협력 (수소융합얼라이언스-中 기차공정학회)	**(내용)**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, 양국 수소차 관련 표준·정책 교류 등을 통해 수소차 확산 촉진 **(의의)** 미래 유망 성장산업인 수소차 분야의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한중간 상호 투자·진출 촉진
⑤ 텔레매틱스 협력 MOU (전품연-中 텔레매틱산업응용연맹)	**(내용)** 한중간 자율주행차(전기차) 등 관련 기술개발, 표준화, 상호 인증 등 협력 **(의의)** 한국 우수기술 기업 대중 진출 기반 조성, 자율차 통신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협력
⑥ 로봇 상설 홍보관 MOU (로봇진흥원-中 절강성로봇산업발전협회)	**(내용)** 로봇 상설 홍보관 운영, 양 기관간 정보교류, 세미나 개최 등 협력 강화 **(의의)** 국내 로봇업체의 중국 진출기반·대중 수출 촉진
⑦ 로봇 산업 협력 MOU (로봇융합연구원-中 전자연구원)	**(내용)** 로봇 산업 분야 공동 기술 연구, 정보 및 인력교류, 협력사업 등 추진 **(의의)** 성장 가능성 높은 로봇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기반 조성 및 기술 협력 확대
⑧ 셀트리온-中 Tasly社간 합작투자 MOU (셀트리온-中 Tasly -中 C Bridge capital)	**(내용)** 셀트리온-Tasly간 합작투자를 통해 중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법인 설립 **(의의)** 급성장중인 中 의약품 시장에서 한중 합작투자를 통한 성공사례 창출, 우리 바이오기업 진출기반 조성
⑨ ㈜툴젠-中 Genovo Bio社간 유전자가위 산업화 협력 MOU (툴젠-中 Genovo Bio)	**(내용)** 유전자가위 작물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 공유,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에 공동 협력 **(의의)** 한중간 바이오 분야 Joint-Venture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여 첨단분야(유전자 가위) 협력 성공사례 창출
⑩ 바이오 산업 협력 MOU (바이오협회-中 북경생물실용화센터)	**(내용)** 바이오 산업 분야 정보교류, 공동 세미나·포럼 등 협력사업 발굴, 회원사간 투자 협력 등 **(의의)** 대표적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 산업 협력 강화로 한중 교역·투자 다각화 촉진
⑪ 섬유제품 시험인증 협력 MOU (FITI시험연구원-中 북경검측기술서비스유한회사)	**(내용)** 섬유산업 무역규제 공동대응, 양국 섬유제품의 시험·인증 상호 인정 등 협력 강화 **(의의)** 섬유·의류분야 한중간 교역·투자 촉진
⑫ 가전 기술교류 및 상호인증 협력 MOU (전품연-中상해계량시험연구원)	**(내용)** 한중 공동 공기청정 인증 인프라 구축, 인증시험 접수 대행 등 절차 간소화 지원 **(의의)** 미세먼지 등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에어가전 분야 중국 진출 촉진, 국제 표준화 공동대응 기반 마련
⑬ 산업기술 협력 MOU (KIAT-中 과학기술교류센터)	**(내용)**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 분야 기술교류, 공동 연구개발 등 **(의의)**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
⑭ 한중 기업간 대화채널 신설 등 협력 MOU (대한상의-中 국제교류센터)	**(내용)** 한중 기업 간 경제관계 이슈 협의, 비즈니스 정보 교류 등을 위해 '한중 기업간 대화' 구성·매년 정례 개최 **(의의)** 민간차원의 정례 협의체를 구축, 공동 정책제안 등 한중 경제협력 증진
⑮ 포장기계산업 협력 MOU (포장기계협회-中 식품포장기계 산업협회)	**(내용)** 포장기계 산업 분야 정보 공유, 포럼·전시회 등 공동사업 추진, 인력양성 등 협력 **(의의)** 한중 포장기계 산업간 상호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
⑯ 전자상거래 협력 MOU (무역협회-中 전자상거래 중심)	**(내용)** 전자상거래 정책·경영환경 관련 정보교류, 비즈니스 기회 발굴 등을 위한 민간 협력 강화 **(의의)** 새로운 방식의 무역 활성화를 통한 한중 교역 증진
⑰⑱ 무보-中 금융기관간 일대일로 협력 MOU (무보-中 출구신용보험공사) (무보-中 건설은행)	**(내용)** 한중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등에 공동진출시 공동 금융지원 강화 **(의의)** 우리기업의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지원, 일대일로 프로젝트 활용 등 지원
⑲ 일대일로 관련 기술협력 (전품연-中 충칭대학)	**(내용)** 일대일로 관련 제조, 물류 등 기술분야 정보·인력 교류, 기술·표준 등 B2B 지원,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 **(의의)** 한중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·일대일로 사업 참여 지원

참고3 **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참고자료**

1. 한중 FTA 현황

□ 한중 FTA('15.12.20 발효)에 **서비스 및 투자챕터가 포함**되어 있으나 **시장개방 수준은 다소 미흡**

○ **(서비스)** 건설·유통·환경·관광 등 **서비스 분야**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**포지티브 자유화 방식**으로 시장개방을 약속

○ **(투자) 제조업·농업·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 투자**에 대한 **시장개방 약속은 불포함**

* 중국은 중-홍콩 CEPA 투자협정('17.6월 서명)을 제외하고 非서비스 투자 개방 약속을 포함한 전례가 없음

□ 서비스·非서비스 **투자 전체**에 대한 **투자보호 조항 및 ISDS 규정**

FTA에서의 서비스·투자 자유화 방식

○ **(포지티브 자유화 방식)**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하고 열거한 분야에 대한 시장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(WTO GATS 방식)

- 164개 WTO 회원국이 채택한 전례가 있는 방식으로 현행 국내법 자유화 수준보다 낮은 개방약속이 가능하여 개도국이 선호

○ **(네거티브 자유화 방식)**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, 특정 분야에서 시장개방 제한조치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(NAFTA 방식)

- 미국, 호주 등 서비스 선진국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현행 자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협정에서 약속한 수준 이상의 자발적 자유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(래칫)이 존재하여 자유화 확대에 유리

□ **(서비스 시장개방 수준)** 양국 모두 **WTO DDA 양허보다 높은 수준을 약속**하였으나 **현행 국내법 허용 수준보다 낮은 편**

○ 중측은 **DDA 양허 대비 법률, 건축/엔지니어링, 건설, 환경, 유통, 엔터테인먼트** 분야 시장 개방 개선

* 병원 서비스, 노인복지 서비스 등은 중측 국내법상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상 미개방

○ **우리**는 **DDA 양허 대비 쿠리어, 건설, 금융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개선**하였으나 **한-미, 한-EU FTA 대비 낮은 수준**으로 개방

2. 후속협상 개요

□ **(관련 내용) 네거티브 방식**에 기초한 **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규정**

○ **(협상대상) 서비스·금융·투자** 3개 분야 **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**

○ **(자유화방식) 원칙적 개방,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**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**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·투자 시장개방** 협상 진행

○ **(협상 시기) 협정발효**('15.12.20) **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**하되 협상 개시 후 2년 내 협상 타결 노력

□ **(후속협상 의의) 서비스·투자 전체**에 대해 **중측이 최초로 진행**하는 **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협상**

* 중-홍콩 CEPA는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포지티브 방식으로,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非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

서비스·투자 협상의 범위

○ 서비스·투자 협상의 전체 범위는 ①**서비스의 국경간 공급**, ②**서비스 투자**, ③**非서비스 투자**로 크게 구분

- **(서비스의 국경간 공급)**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소비자가 **각자의 국가에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제공·소비**하는 형태(인터넷을 통한 법률자문) 및 **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**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(관광)를 지칭
- **(서비스 투자)** 건설·유통 등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**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법인 등을 설립**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(롯데마트가 중국내 롯데마트 설립)
- **(非서비스 투자)** 제조업 등 非서비스 공급자가 **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법인 등을 설립**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(현대자동차가 중국내 자동차 공장 설립)

○ 서비스 교역통계는 서비스 국경간 공급에 대한 통계만을 의미하며 서비스 투자 및 非서비스 투자는 투자통계로 파악됨

○ 별도로 유보하지 않는 한,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**네거티브 방식** 특성상 ①포지티브 방식 대비 **보다 높은 자유화 확보가 용이**하고, ②**시장개방** 관련 중측 제도 **투명성 확보** 가능

- 특히 네거티브 방식은 **협정에서 약속한 범위 이상**으로 **자발적 자유화를 진행**한 경우에도 이를 **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(래칫)**이 존재하여 **자유화 확대에 유리**

* 상해 FTZ내 100% 외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'15년부터 합작만 허용 →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약속시에는 이와 같은 자유화 후퇴 불가

○ **非서비스 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약속을 확보**하여, 중국 **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**하고 우리 기업 활동의 **불확실성 감소**

□ **(중국과 합의사항)** '17.12월 VIP 방중 계기에 양국간 **후속협상 개시 의사를 재확인**하고 **1차 협상을 '18년 초 개최**하기로 합의

3. 후속협상 추진 방향

가. 對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

□ **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**이자 **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**인 중국에 대한 **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, 시장 선점효과 향유**

* 중국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'15년 50% 돌파, 서비스산업 성장률(8.3%) > GDP 성장률(6.9%), '16년 중국은 서비스교역 총액 세계 2위('20년 1조불 전망)

** '16년 서비스 분야 우리의 對中수출(205억불)은 對세계수출(928억불)의 22%

○ **관광, 문화, 의료, 법률** 등 **우리 업계의 경쟁력 및 對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**에 대한 **시장개방 확대를 적극 모색**

나.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

□ 중국은 **우리의 제2위 FDI 대상국**(도착기준 3위)으로 우리 기업 **투자**에 대한 **실질적 보호를 확대**하여 **기업애로 등 해소 기대**

* '16년 (韓→中)40억불(신고), 33억불(도착) (中→韓)20.5억불(신고), 4.3억불(도착)

○ **설립전 내국민 대우** 확보와 **송금 자유** 원칙 강조, **청산절차 관련 우리 기업 애로 등 해소** 추진

다.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

□ 고용 기여도가 높은* **서비스 분야 교역 증대**를 통해 **인적 교류를 확대**하고 **일자리 창출 촉진**

* 취업유발계수('14, 명/10억원): (서비스업) 17.3 > (소비재) 12.8 > (제조업) 8.8

4. 향후 추진 계획

□ 통상절차법에 따라 **공청회 및 국회보고 진행 예정**

○ 업계·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민관 공동대응 강화 지속 추진

* '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청각 등 서비스분야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

참고4 **한-중 주요 통계**

1.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

(%)

구분	'13	'14	'15	'16	17.1Q	17.2Q	17.3Q
한국	2.9	3.3	2.6	2.8	(2.9)	(2.7)	(3.8)
중국	7.7	7.4	6.9	6.7	(6.9)	(6.9)	(6.8)

※ 괄호안: 전년동기 대비

2. 한중간 교역 규모

(韓무역협회, 억불, %)

구분	'14	'15	'16	'17.10 누계	1Q	2Q	3Q	10월
수출	1452.9 (△0.4)	1371.2 (△5.6)	1244.3 (△9.3)	1142.7 (13.4)	335.3 (17.5)	319.2 (7.4)	362.1 (15.3)	125.8 (13.5)
수입	900.8 (8.5)	902.5 (0.2)	869.8 (△3.6)	799.8 (12.8)	233.8 (15.6)	243.5 (13.9)	243.2 (12.5)	79.3 (2.9)
수지	552.1	468.7	374.5	342.9	101.5	7,578	118.9	46.5
교역	2353.7 (2.8)	2273.6 (△3.4)	2114.1 (△7.0)	1942.5 (13.2)	569.2 (16.7)	562.7 (10.1)	605.3 (14.2)	205.1 (9.1)

※ 중국 기준 '16년 한중교역(해관총서, 억불, 전년동기비%) : (교역)2,524, △8.5, (수출)1,589, △8.9, (수입)935, △7.7

3. 대중 서비스 교역 규모

(한국은행, 억불, %)

구 분	'11	'12	'13	'14	'15	'16
수출(credit)	132.8 (0.4)	148.0 (11.5%)	184.2 (24.4)	223.1 (21.1)	209.2 (△6.2)	206.2 (△1.4)
수입(debit)	141 (14)	135.8 (△3.7)	130.8 (△3.6)	144.4 (10.3)	151.6 (5.0)	160.5 (5.9)
수지	△8.2	12.3	53.4	78.7	57.5	45.6

4. 방한 중국인 관광객

(한국관광공사, 백만명)

구 분	'10	'11	'12	'13	'14	'15	'16	17.1-10
방한중국인	1.88	2.22	2.84	4.33	6.13	5.98	8.07	3.54

5. 한중간 투자규모

(韓산업부/수출입은행, 억불)

구분		'14	'15	'16	'17.3Q 누계	1Q	2Q	3Q	누계
韓→中	신고	38.0	43.9	40.0	21.8	6.5	6.5	8.8	775.6
	도착	31.8	29.6	33.0	17.9	6.0	4.7	7.2	582.5
中→韓	신고	11.9	19.8	20.5	6.0	1.6	3.2	1.3	107.7
	도착	3.1	17.7	4.3	1.3	0.4	0.7	0.3	51.8

※ 중국 기준 '17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투자(상무부) : (투자액) 15.4억 달러

참고5 서비스 자유화 방식

□ 서비스 자유화 방식에는 크게 ①WTO **GATS 포지티브 방식**(한-중 FTA 등)과 ②**NAFTA 네거티브 방**식(한-미 FTA 등) 존재

1 **(포지티브 방식) 개방하려는 분야를 양허표에 기재**하며, 기재되지 않은 분야에는 개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

○ 현행 **국내법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**할 수 있으나, 양허표에 기재한 개방수준 대비 **더 강한 제한·새로운 제한조치 도입 불가**

2 **(네거티브 방식)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***를 원칙으로 하며, 일반의무에 **합치하지 않는 조치**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**유보안에 기재**

○ 유보안은 ①**현재유보**(Annex I)와 ②**미래유보**(Annex II)로 구분

① **현재유보**에서는 **현행 조치 이상의 제한이 없을 것임을 약속**하며 **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**(ratchet mechanism)* 적용

* 국내법 개정 시 자동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새로운 자유화 의무로 인정되어,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개정이 가능하나 후퇴는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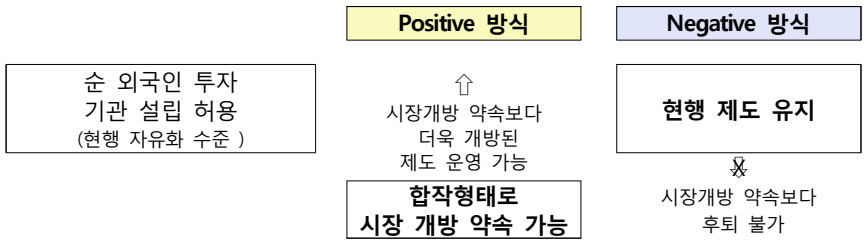
② **미래유보**에서는 현행 조치유무와 무관하게 **장래에 어떠한 제한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한**을 포괄적으로 유보 가능

* 주로 폭넓은 정책권한이 필요한 분야(예: 교육, 보건 등)를 미래유보에 기재

□ **(예시)** 현행 제도상 100% 외국인 회사 설립 허용시

○ **포지티브 방식**에서는 현행 개방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**합작 형태로 시장 개방 약속이 가능**하며, **합작 형태로 개방 후퇴도 가능**

○ **네거티브 방식**에서는 현행 조치 이상의 제한이 불가능한 바, **합작 형태로 후퇴는 불가**(현재 유보의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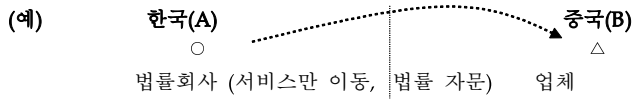


참고6 서비스의 모드별 공급 형태

< 서비스의 모드별 공급 형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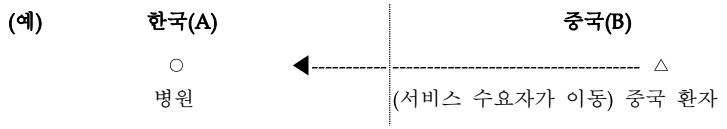
○ **Mode 1 (cross-border supply : 국경간 공급)** 상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국에 머물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

예)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서비스 제공(경영컨설팅, 법률자문, 건축설계 도면제공), 국제화물운송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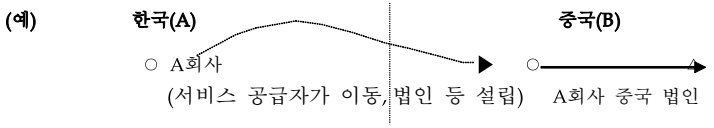


○ **Mode 2 (consumption abroad : 해외소비)**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(여행이나 출장)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
예) 여행, 해외유학, 해외진료, 해외여행 중 식당이용이나 이발,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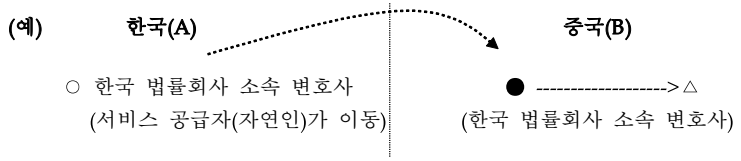


○ **Mode 3 (commercial presence : 상업적 주재)**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을 설립(외국인 투자)하여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



○ **Mode 4 (movement of natural person : 자연인의 이동)**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(출장)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

예) 해외 건설 노무자의 건설 서비스 제공, 우리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가서 자문서비스를 해주는 경우, 우리 가수의 해외공연



참고7 한-중 FTA상 중측 서비스 시장개방 주요 내용

	분야	양허 내용
GATS 대비 추가		
	①시장조사서비스, ②경영컨설팅, ③직업소개 및 공급 서비스, ④빌딩청소서비스, ⑤포장재료 인쇄 서비스, ⑥스포츠 및 그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, ⑦도로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**추가 개방**	
	항공 컴퓨터 예약 시스템(CRS) 서비스	▸합작투자 허용
	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	▸라이센스 발급시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 폐지
	소유/임대 관련 부동산 서비스	▸고급 건물 (아파트, 사무실 건물 등) 관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 허용
	통번역 서비스	▸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 허용(GATS상 합작 투자만 허용)
	수수료 및 계약 기초 부동산 서비스	
	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	
	DDA 대비 추가	
	법률	▸중국 상해 FTZ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(의뢰인은 상해 FTZ에 한정되지 않음)
	건축/ 엔지니어링	▸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해외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
	건설	▸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해외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
	유통	▸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
	환경	▸폐수 서비스 등 5개*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* 폐수, 고형 폐기물 처리, 배기가스 정화, 소음저감, 위생 서비스
	엔터테인먼트	▸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관련 49% 지분 한국기업 허용